

교육수요자만족도관리규정

5-1-25

규정번호 5-1-25
제정일자 2015.11.23
최근개정 2026.2.6
개정차수 7차 개정
관리부서 AI·IR팀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명지전문대학(이하 “우리대학”이라 한다)이 실시하는 교육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수집, 분석 및 지속적 개선을 위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우리대학의 교육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조사, 분석, 평가 및 개선 활동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 3 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수요자”라 함은 우리대학으로부터 제반 교육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거나 제공받은 자로 재학생, 졸업생, 학부모, 산업체, 교직원 등 우리대학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를 말한다.(개정 2024.7.24.)
2. “만족도 지수”라 함은 수요자가 교육 및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를 일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표현하는 지수를 말한다.
3. “조사담당자”라 함은 수요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직접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
제 2 장 책임과 권한

제4조(주관부서)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는 AI·IR센터로 하며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.(개정 2018.02.26., 2018.08.27., 2023.03.30., 2024.7.24., 2026.02.06.)

1.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계획 수립(개정 2024.7.24.)
2.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실시
3.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의 분석 및 평가
4.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
5.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확정 및 사후관리

제 5 조(관련부서)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의 관련부서는 관련 학과 및 부서로 하며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.(조번호 변경 2018.02.26., 개정 2024.7.24)

1. 만족도 조사 및 평가 지원

2.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계획 수립·실시(개정 2018.02.26.)

제 3 장 업무절차

제6조(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계획 수립) ① AI·IR센터는 매년 교육 수요자 만족도조사계획(이하 “조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한다.(조번호 변경, 개정 2018.02.26., 2018.08.27., 2023.03.30.,2024.7.24., 2026.02.06.)

② 조사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.(개정 2018.02.26.,2024.7.24)

1. 조사의 목적 및 적용범위
2. 조사시기(일정) 및 대상
3. 조사기준 및 방법
4. 조사항목
5. 기타 필요한 사항

제7조(조사 실시) ① AI·IR센터는 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조사를 실시한다.(조번호 변경, 개정 2018.02.26., 2018.08.27.,2023.03.30.,2024.7.24., 2026.02.06.)

② 조사담당자는 평가대상 및 방법에 따라 조사방법을 최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조사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조사개시 이전에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조사담당자는 온라인 설문조사, 인터뷰, 유선통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 관련 부서장에게 조사 자료를 제출한다.

제8조(결과분석 및 통보) ① AI·IR센터는 조사 자료를 분석·평가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, 관련 학과 및 부서에 통보한다.(조번호 변경, 개정 2018.02.26., 2018.08.27.,2023.03.30.,2024.7.24., 2026.02.06)

② (항삭제 2018.02.26.)

제9조(환류) ① 관련 학과 및 부서는 조사결과에서 개선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활동 또는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, 개선 또는 예방 조치한 결과에 대하여 AI·IR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.(조번호 변경, 개정 2018.02.26., 2018.08.27.,2023.03.30.,2024.7.24., 2026.02.06)

② AI·IR센터는 개선조치 보고서를 매년 총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 학과 및 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.(개정 2018.02.26., 2018.08.27.,2023.03.30.,2024.7.24.,2026.2.6.)

③ 관련 학과 및 부서는 개선조치 보고서를 토대로 차후 학과 운영계획 및 부서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. (항신설 2018.02.26., 개정 2024.7.24)

제 10 조(보칙) 학과 또는 부서별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는 본 규정을 준용하되, 이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(개정 2017.07.14.)(조번호 변경 2018.02.26.)

명지전문대학 규정 / 5-1-25 교육수요자만족도관리규정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4조, 제6조제1항, 제7조제1항, 제8조, 제9조제1항 제2항)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제1호, 제4조, 제4조제1호, 제5조, 제6조제1항·제2항, 제7조제1항, 제8조제1항, 제9조제1항·제2항·제3항)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4조, 제6조제1항, 제7조제1항, 제8조제1항, 제9조제1항·제2항)